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선거시행세칙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선거의 원칙)

제1항 선거는 전(前)대 학생회 사업을 발전적으로 평가, 계승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치러져야 한다.

제2항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항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선거규칙의 목적)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회칙에 근거를 둔다.

제2장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위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권한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권력기구이다.

제4조(목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데 있다.

제5조(업무 및 권한)

제1항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제2항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제3항 선거시행세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소선관위)와 각 선본이 합의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각 선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4항 작성된 선거인 명부 확인, 선거공보 발행, 선거장소의 질서유지,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결정, 참관인 부정 시 퇴장 명령, 개표 및 당선공고,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와 재선거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구성)

제1항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소선관위)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에 각단위 선거관리 위원장(각 학과 학생회장)들로 구성된다.

제2항 소선관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선관위 비례위원을 위촉한다.

제3항 소선관위 비례위원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에서 소선관위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인 원수는 소선관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단, 소선관위원은 자신이 장으로 있는 소속의 위 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항 소선관위 비례위원의 역할 및 권한은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선거시행세칙 제10장 투표에 기재되어 있는 소선관위원의 역할 및 권한과 동등하게 부여하며 제10장 이외의 역할 및 권한은 일절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소집, 개회 및 의결)

제1항 소선관위의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소선관위장과 소선관위원 1/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소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제3항 소선관위의 결정은 재적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단, 의결권은 소선관위원 모두에게 주어진다)

제4항 '선거공영제'의 실행과 이의제기,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소선관위장은 각 선본들의 본부장을 소집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본부장은 필요시 발언을 행사할 수 있지 만 소선관위 의결 시에는 참관에서 제외된다)

제3장 선거사무관리자 교육

제8조(목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선거사무관리자 교육은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선거 4원칙의 준수와 선거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행 및 정확한 진행을 위해 실시한다.

제9조(구성 및 교육)

제1항 선거사무관리자란 소선관위원 및 비례위원으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 2. 선거인 명부 작성
- 3. 선거 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 4.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 5.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확정
- 6. 재선거의 여부와 결정
- 7.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단, 소선관위 비례위원은 제외)

제2항 선거사무관리자 교육은 선거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제3항 선거사무관리자 교육은 후보자 서류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 관리방법, 개표 시 주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 및 자격)

제1항 소선관위는 소선관위가 발족한 후 15일 이내에 선거사무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사무관리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사무관리자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하며, 이수하지 못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박탈당한다.

제4장 후보자 등록

제11조(후보자 자격)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주어 진다.

- 1.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 2. 후보자 본인이 직접 본회의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은 복수추천이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학우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3.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세종대학교 재학생, 복학 예정자에 한한다.

제12조(후보자 등록)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소선관위에 제출해야한다.

-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소선관위 소정양식)
- 2. 200인 이상의 추천서
- 3. 재학증명서(재학생), 휴학증명서(복학예정자)
- 4. 정견서
- 5. 서약서
- 6. 전체선거공약
- 7. 이력서
- 8. 선거운동원 명단(소선관위 결정에 의한 시기에 한해 1차에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제13조(후보자 심사)

제1항 소선관위는 등록시간 마감 후 2시간 이내 제3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하다.

제2항 입후보자가 제12조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날짜의 시간(17시00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한다.

제3항 입후보자는 후보자 심사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보완한 전체선거공약을 제출할 수 있다.(단, 과반수 후보자들이 건의를 할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기한을합의할 수 있다)

제4항 소선관위는 후보자 자격심사 중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학칙, 회칙위배 등)가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입후보자 최종등록)

소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며 역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 전원으로 하며, 불참 시 소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등록 구비서류 확인 및 최종등록 결정
- 2. 선거시행세칙 검토 : 세칙 검토와 함께 각 선본 대표와 소선관위장이 규칙에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
-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정의)

제1항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2항 추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후보자 추천, 여론 수렴, 후보자 추대모임 등은 사전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소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추천서는 소선관위에서 추천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 3. 이름(혹은 선본)을 거명한 후보추대모임은 1회에 한해 실시하며, 그리고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로 한한다. (단, 대자보는 전지 1장씩 3개소에 부착할 수 있다)
- 4. 강의가 시작하기 전 강의실에서 5분간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다.
- 5.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퇴장한다.
- 6.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선전물이 학생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16조(선거운동 기간)

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소선관위 발족과 동시에 소선관위가 공고한 일자로 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은 최소 1주일, 최대 2주일로 제한한다)

제2항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에 관계된 물품판매, 유인물의 배포, 추천 기간 이전의 후보 및 선본 명의를 건 지지 및 추천대회를 말한다.

제3항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17조(선거운동원)

제1항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은 1인으로 하며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명단에 미등록된 사람의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인정한다.

제3항 선거운동원은 세종대학교 재학생, 복학 예정자에 한한다. (단,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4항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1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중앙, 단대, 동아리 연합회, 과 선거관리위원
- 2.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예비역협의회 임원 (과대표는 제외)
- 3. 학내 언론 3사(세종대신문사, 군자방송국, 영자신문사) 소속원
- 4. 선거운동원 명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
- 5. 총학생회 산하 기구

제2항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19조(선거운동)

제1항 각 후보 진영은 제18조 1항에 따라 각 후보 진영 소속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모든 선거권자에게 모든 종류의 금품수수나 술좌석 등의 향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제2항 각 후보 진영은 타 후보에 대한 비판 및 비방을 할 수 없다.

제3항 학교 외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제4항 여론 수렴을 허가한다. 그러나 여론 수렴의 결과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발표할 수 없다.

제5항 선전전을 진행할 시 음향 및 조명기기, 악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6항 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경고 1회 최대 자격박탈의 조치가 취해지며 2항, 3항, 4항, 5항, 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부여한다.

제6장 선전 및 유세

제1절 선전

제1절 선정

제20조(자료집)

제1항 각 선거운동본부당 1,000부 이하로 제한하며 선본과 논의해서 자료집 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단, 자료집 도수는 2도로 제한한다)

제2항 공동정책자료집 제작 및 배포는 소선관위와 선본의 논의 후 진행할 수도 있다.

제21조(선전물)

제1항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선전물 종류(제6항~12항)는 소선관위와 후보자들이 심의후 결정한다.

제2항 모든 부착물과 현수막은 소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한다.

- 1. 부착물과 현수막은 포스터, 대형게시물, 특수게시물, 입체게시물을 포함한다.
- 2. 기타 소선관위의 판단 하에 규정되는 이하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제3항 선거운동 기간에 배포되는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소선관위의 사전허가를 거친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소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허가시간은 소선관위에서 지정한다.

제4항 1항,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5항 유인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2,000부로 제한한다. (단, 철한 것은 자료집으로 규정하고, 신문은 크기에 상관없이 8면 이하로 한다)

제6항 포스터는 최대 2종으로 하고, 1종당 200점 이내로 하며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최대 A2사이즈)

제7항 대자보 게시물은 종류와 관계없이 50점 이내로 하며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A0사이즈)

제8항 대형게시물은 종류와 관계없이 10점 이내로 하며 지정 장소에 게시한다. $(크기 1.8 \times 1.8 \text{M})$

제9항 특수게시물은 2점 이내로 하며 지정 장소에 게시한다. (크기 5×5M 이내)

제10항 입체게시물은 2점 이내로 하며 지정 장소에 게시한다. (크기 2×2×2M 이내)

제11항 선거운동원이 신체에 착용 및 부착할 수 있는 선전물은 3개 이하로 한다. (선거 운동복을 포함하며, 유세 일은 예외로 한다)

제12항 컴퓨터 통신 선전물은 한 선본 당 하나의 계정으로 1일 2점 이내로 한다.

제13항 6항, 7항, 8항, 9항, 10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1회를 주고, 11항, 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1회를 준다.

제2절 유세

제22조(합동유세)

제1항 합동유세는 후보자와 소선관위가 심의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한다.(단, 실행시에 소선 관위 관리하에 실시한다)

제2항 합동유세의 순서는 소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항 유세 시작 5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았을 시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 각 후보 선본 당 유세시간은 30분으로 한다. 30분이 넘을 경우 소선관위는 마이크 등 유세시설을 철거한다. (단, 유세 자가 교체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항 후보자는 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선관위장의 동의하에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제6항 타 후보자가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자기 선본의 유인물,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타 후보 유세가 끝나기 전에 유세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제7항 3항, 5항, 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는 경고 1회를 준다.

제23조(합동 공청회)

제1항 합동 공청회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 참여한 선본의 후보와 정책을 대중적으로 검증하고 학우들에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을 도우며, 각 선본의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소선관위는 공청회 신문 발행비, 공청회 홍보 등 공청회에 필요한 제반의 조건들을 담당하다.

제3항 공청회 준비단은 언론 3사(세종대신문사, 군자방송국, 영자신문사) 및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재학생에 한하여 구성한다. 단, 4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 필요시 소선관위의 추천과 언론 3사(세종대신문사, 군자방송국, 영자신문사)의 판단으로 부문 계열 단위(소모임, 학회, 동아리)도 공청회 준비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공청회 준비단 모집공고는 공청회 10일 전까지 소선관위가 진행한다.

제5항 후보자는 합동 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1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단,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경고 1회를 준다.

제6항 합동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공청회 준비단의 질의와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단, 소선관위와 공청회 준비단의 협의에 의해 형식을 바꿀 수 있다)

제7항 소선관위는 공청회 질문을 공청회가 시작되기 5시간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소선관위가 참여한 회의에서 1/2 이상의 소선관위가 이의제기할 시에 질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항 합동 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소선관위는 공청회 준비단 및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비난의 질의 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경고, 3회이상은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제9항 소선관위는 공청회가 끝난 후 녹취한 원고의 공정성에 대해 해명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청회 준비단과 그 부분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다.(단, 판단은 공청회 준비단에서 하고 검토된 기사는 재검토할 수 없다)

제10항 배포 직후 공청회 신문에 대한 특정 선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즉각적인 배포중지 및 소선관위의 판단으로 추후 배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항 각 후보 진영은 공청회 5일 전까지 정책 자료집을 공청회 준비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2항 공청회 준비단은 각 선본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같은 횟수로 각 선본에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서면질의의 질문내용과 답변은 공청회부터 반드시 공개한다.

제7장 참관인

제1절 투표참관인

제24조(총칙)

제1항 투표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감독하는 자를 말하다.

제2항 각 후보자는 각 투표소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자격)

제1항 참관인은 각 후보 측에서 제의한 선거운동원으로 한다.

제2항 각 후보자는 투표 2일 전 18시까지 참관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제26조(이의제기)

제1항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 \cdot 개표 상황을 참관, 감독하여 투 \cdot 개표 상황에 대하여 소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하여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항 해당 단대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해당 단대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조(전제조건)

제1항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소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소선관위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선거일정이 끝날 때까지 참관자격을 상실한다.

제3항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할 경우.
- 3. 기타 소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2절 개표참관인

제28조(역할)

제1항 각 후보의 선본장은 투표 2일 전 오전 12시까지 개표참관인 4인을 선정하여 소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3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소선관위장의 허락 하에 한다.)

제8장 선거과정에서 이의제기

제29조(이의제기권자)

제1항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선본장만이 할 수 있다.

제2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소선관위원장은 이의제기가 근거 있다고 판단했을 때 즉각 소선관위 회의를 소집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분해야 한다.

제3항 각 단위 선본이 총학생회 선거나 타 단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선본장은 소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제기의 처리)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소선관위의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이의제기 처리는 소선관위 1/2 이상의 의결로 처리한다.

제3항 소선관위의 결정사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사안 당 2번으로 제한한다.

제9장 징계

제31조(정의)

징계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소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시정명령, 경고, 후보자격 박탈로 나누며 경고 4회 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33조(징계의 통보)

제1항 시정명령은 소선관위장이 해당 선본장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 후보자격 박탈은 이를 함께 공고한다.

제2항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선본이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만약 시정을 고의로 늦추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할 시에는 선관위는 2차 경고하고 또다시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3차 경고를 준다.

제3항 1차 경고 조치가 3회 반복 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4항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 공개사과문을 소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단, 공개사과문의 문구는 소선관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며 해당 선본장과 소선관위장의 최종 확인 후 게시한다.

제5항 소선관위는 모든 징계의 통보를 3시간 이내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34조(징계의 의결)

징계의 수위 및 의결은 소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5조(재심의)

제1항 선본장은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소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보가 경고 4회로 인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될 상황이 된 경우에는 소선관위 재적 위 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제3항 후보자격 박탈을 통고받은 선본은 12시간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선 관위는 이에 대한 결과를 12시간 이내에 통고한다.

제10장 투표

제1절 총칙

제36조(투표구 및 투표수)

제1항 투표구는 소선관위에서 지정한다.

제2항 투표구는 그동안의 관례와 각 단대의 사정에 따라 소선관위의 의결로 증가할 수 있다

제3항 투표소에는 소선관위 또는 해당 단대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모든 유인물 부착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4항 투표소에서 후보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2M 이내로 진입할 수 없다. (단, 필요 때문에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37조(신분확인)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1.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단,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한다.)

제38조(투표절차)

제1항 선거권자는 모든 투표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2항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선관위의 신분확인
- 2. 선거인 명부확인
- 3. 투표자의 날인 및 서명
- 4. 투표용지의 배부
- 5. 투표

제39조(투표소에서의 질서)

제1항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 선본장의 합의 하에 투표소 내 인사 등의 행위는 규제 또는 실행할 수 있다.

제2절 투표함의 이송과 보관

제40조(투표함의 이송)

제1항 투표함은 투표 당일 오전 9시에 소선관위장과 각 선본장의 참관 아래 봉함에 자물쇠를 채운 상태에서 각 투표구로 소선관위와 참관인이 함께 이송한다.

제2항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및 제반 물품은 참관인의 입회하에 해당 소선관위가 투표구로 이송한다.

제41조(투표마감 후 이송)

제1항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하고 소선관위장과 참관인이 도장을 찍은 후 소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소선관위실로 이송한다.

제2항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갖춰야 할 서류물품은 다음과 같다.

- 1. 기재한 선거인 명부
- 2. 남은 투표용지
- 3. 제반 기표 용품

제42조(투표함 소선관위 도착 후)

제1항 소선관위장은 투표함, 41조 2항의 서류물품 등을 인수한 후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 하다.

제2항 각 투표소의 소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에 이상 유무에 관한 참관인의 각서를 받는다.

제43조(투표함의 보관)

제1항 각 투표구의 투표함은 소선관위 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 소선관위 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항 소선관위는 투표함을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며,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영상을 공개한다.

제11장 개표

제44조(개표시간)

개표시간은 투표마감 후 30분 이후부터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선관위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45조(총칙)

제1항 개표는 소선관위원만이 할 수 있다.

제2항 표의 유, 무효 및 특정 후보의 득표 기준은 소선관위가 정한다.

제46조(개표장)

제1항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소선관위가 정한다.

제2항 개표장에서의 질서유지는 소선관위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제3항 후보자는 개표시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를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47조(개표소)

제1항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2항 개표소에는 소선관위 위원과 개표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제3항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소선관위장만이 할 수 있다.

제48조(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투표인 수의 공고
- 2. 투표함 개봉
- 3. 개표

-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5. 후보의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 6. 현황판에 기재

제49조(무효표)

다음 각 항의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2. 선관위원의 검인이 없는 것.
- 3. 기표가 불분명하거나 규정 이외의 표식을 한 것.
- 4. 기타 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하며, 참관인의 인정을 받는다.
- 5. 무효표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를 따른다.

| 관련항목 | 유효 투표 | 무효투표 |
|-------------------------|---|--|
| 정규의 투표용지 |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 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 · 정당에 기표한 것 인지가 명확한 것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져 소실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투표용지의 <u>일련번호지를</u> 떼지 아니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 <u>투표관리관</u> 의 사인날 인 | F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과 ②*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자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 등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 지로 판단되는 것* |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 는 것 |
| <u>기표용구</u> | (D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예시 : 볼 펜대, 만년필대, 붓두껑 등)로 표를 한 것 |
| 기표의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S)표만 기 표한 것 | ○ 田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예시: 좋다, 나쁘다, 성명 등) 또는 물형(예시: ○, ⊙, ∨, ×, △ 등)을 기입한 것 ○ 田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 기표의 형태와 위치 | 두 후보자 · 정당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 · 정당에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 · 정당 에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사퇴·사망하였거나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에게 기 표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 기표의 횟수 | · 한 후보자·정당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정당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 된 것이 어느 후보자·정당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서로 다른 2이상의 후보 자·정당란에 각각 표를 한 것을 의미함) |
| 기타 | |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u>투표지</u> 를 공개한 것 |

제50조(기권표)

기표가 없는 투표용지를 기권표로 한다.

제51조(오차)

전체 투표인 수(선거인명부에 투표를 한 것이 확인된 수)와 실제 투표수(투표용지 수)의 차

제52조(오차율)

오차/실제 투표수(투표용지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제53조(효력)

모든 투표함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 자체가 무효처리되다.

제12장 당선

제54조(당선의 기준)

제1항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항 단, 투표율이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이고 입후보한 선본이 세 선본 이상일 경우 다득 표순으로 최다 득표를 한 선본이 당선된다.

제3항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는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55조(당선공고)

제1항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소선관위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제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소선관위 재적 대표자 1/2 이상으로 한다)

제3항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당선 확정공고를 한다.

제13장 재투표 및 재선거

제56조(재투표)

제1항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회칙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거나 오차율 초과일 경우 재투표를 한다.

제2항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은 득표 상위 1, 2위 선거 후보팀에 한해서만, 오차율 초과일 경우 모든 선거 후보팀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

제3항 재투표는 7일 안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제57조(재선거)

제1항 전체투표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 재선거를 한다.

제2항 부정선거일 경우 재선거를 한다.

제3항 구체적 시기와 일정은 소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본 세칙은 201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